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26 선고 2023나2133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26 선고 2023나21335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6. 15 선고 2022가단10651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4. 7. 5.

판결선고 2024. 7. 26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6. 15. 선고 2022가단106517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1. 3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,437,46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2,437,466원과 그 중 2,761,68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장 제출을 통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‘2. 추가 판단’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채무자인 E가 파산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, 채무자인 E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하단20773호, 2023하면20773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함에 따라 위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되던 중, 2023하단20773호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2023. 10. 19. 파산선고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24. 4. 4.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고, 2023하면20773호 면책사건과 관련하여 2024. 1. 26. 위 면책신청이 취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, 위와 같이 채무자 E에 대한 위 파산사건이 파산폐지로서 종국된 이상 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춘호, 판사 박광우, 판사 황병헌

별지